

기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① 포천의 문화재 현황

포천사회가 갈수록 도시화 됨에 따라 우리의 문화재의 가치가 희미해져 가고 있다. 우리의 얼과 정신을 간직한 문화재를 제대로 알고 생활속의 지혜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을 소개하기로 했다. 이번 연재의 필자는 전 포천문화원 원장과 포천향교 전교직을 역임하고 현재는 포천시민대중제작추진위원회 위원장과 포천명유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최중규 회장이다. (편집자주)



최 중 규 포천영유회 회장

문화재란 정신적 가치와 시각적, 음향적으로 표현되는 독특한 주체성을 보존하는 중요한 매체이다. 그러기에 문화재를 창조해낸 집단이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구전(口傳)음악인종학적인 유산 민속(民俗) 습관 생활양식 등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을 포괄한다. 근래에 와서 문화재라는 말보다 "문화유산(文化遺産)"이란 말을 많이 쓴다. 문화재에는 1.유형문화재, 2.무형문화재, 3.천연기념물, 4.문화재자료로 구분하고 있다.

- 1.유형문화재**
유형문화재란 건조물,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
- 2.무형문화재**
연극이나 무용, 음악,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3.천연기념물
고분, 성지(城址), 요지(窯址), 유물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명승지로서 예술이나 관상상 가치가 큰 것 그리고 동물, 식물, 광물, 동굴 등 학술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4.문화재자료
의식주, 생업, 신앙과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구 등 국민 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렇듯 네 가지로 분류함과 아울러 그 경중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 시군지정 향토유적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는 포천의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 순으로 게재한다.

포천시에는 많은 문화재가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국가지정 문화재로 보물 1점, 사적 1점, 경기도지정문화재로 유형문화재 4점, 무형문화재 2점, 기념물 7점, 문화재자료 2점, 포천시 향토유적 41점 등이 있다. 이밖에도 포천시의 역사와 문화를 말해주는 문화유적과 역사의 현장, 유물이 널리 분포되어 역사와 문화의 고장을 대변하고 있다. 포천시의 지정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지정 보물은 청춘군 이종노 정사공신교서로 제1174호로 지정되었으며 참수면 추동리 433번지에 있다. 국가지정 사적 반월성지는 제403호로 지정되었고 군내면 구읍리 산5-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도지정 유형문화재로는 ▶청성사(제64호, 신북면 가채리 산 23-2) ▶용연서원(제70호, 신북면 신평리 2리 165) ▶인평대군 치제문비(제75호, 신북면 신평리 산 46-1) ▶석조여래입상(제150호 어룡동 산19) 등이 지정, 보존되고 있다.



도지정 유형문화재 인평대군 치제문비가 세워져 있는 신북면 신평리 산 46-1인평대군의 묘소 전경



국가지정사적 제403호로 지정된 군내면 구읍리 산5-1번지 반월성지 전경.

신북면 신평리 2리 165) ▶인평대군 치제문비(제75호, 신북면 신평리 산 46-1) ▶석조여래입상(제150호 어룡동 산19) 등이 지정, 보존되고 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는 ▶포천메나리(제35호, 가산면 방축리 산23-2) ▶풀파리(제37호, 영북면 자일리 959-20)가 지정, 보존되고 있다.

도지정 기념물로는 ▶이항복 선생 묘(제24호, 가산면 금현리 산 4-2) ▶재산사(제30호, 신북면 가채리 678) ▶서성산생 묘(제35호, 설운동 산1-14) ▶화산서원(제46호, 가산면 방축리 산16-1) ▶충목단(제102호, 소흘읍 무봉리 27) ▶인평대군 묘 및 신도비(제130호, 신북면 신평리 산 46-1) ▶영송리 선사유적(제140호, 가산면 금현리 304-2)이 지정, 보존되고 있다.

도지정 문화재 자료는 ▶포천향교(제164호, 군내면 구읍리 176) ▶금현리 고인돌(제47호, 가산면 금현리 304-2)이 지정, 보존되고 있다.

자 / 유 / 계 / 시 / 판

포천신문이 있어 가능했다고 봅니다

지금은 생계에 쫓기다 보니 글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에 제가 한탄강네트워크 기획장으로 활동할 때 포천신문이 지역 여론을 조성해 주고 사회의 공기로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브라질의 플라 대통령이 이야기했다지요. 빈곤이 퇴치되지 않고 언론이 정도를 걷지 않는 곳에서는 민주주의가 꽃 필수 없다고요. 우리 포천지역 사람들이 소모적이고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국제 사업을 멈추게 할 수 있고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창출하게 한 것은 지역에 포천신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루즈벨트도 정부는 없어도 언론은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포천신문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호

장을 보고 왔습니다

어젠 오랜만에 장을 보러 동네마트에 다녀왔습니다. 친구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다니 평소보다 거리가 짧아진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트에 도착하고 나서야 사야할 목록을 적어 간다는게 깜짝이고 그냥 와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꼭 사야하는 몇 가지를 사고서도 뭔가 빠졌다고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시식코너를 돌아다녔습니다. 시식코너를 돌아다니며 허기진 배를 채우다가 계산을 하러 몸을 돌린 그때 갑작스레 눈에 들어온 거대한 모기 인형을 보고는 살충제를 사야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태껏 버리고 별렀던 살충제. 어떤 것이 좋을지를 한참동안 고민하며 서있다가 판매대 앞에 서있는 언니의 말에 그중 한 종류를 덜컥 구매해버렸습니다. 물론 이것저것 사다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지출이 초과되었지만 두손 가득 든 물건들-주로 먹을 것들을 바라보며 기분이 좋아 룰루랄라 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니 또 충동구매를 해버린 몇가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주로 먹을 것들이라 보니 언젠가는 다 먹겠지라고 생각하며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드르륵 여는 순간 작은 날벌레들이 나타났다는 듯이 우루루 달려 들었습니다. 밤충만보다 작은 알수없는 녀석들. 그 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 구매한 '홍XX'를 한번 써보자. 우후후후, 이 녀석들 다 죽었어! 으하하하!"

주부명예기자

국적포기자를 부끄러워해야...

공군은 "제1호 여군 정비기장인 박미선 하사가 지난 5월16일 KT-1(고등훈련기)에 대한 4백 무결한 비행 지원을 달성했다"고 하네요! 요즘 병역의무 면탈을 목적으로 국적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공군에 입대해 그 꿈을 활짝 펼치고 있는 그녀를 보면 국적포기자들과 같은 남자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혜란

특별 기획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④

犯罪搜查의 性格과 令狀主義

犯罪搜查는 法律의 性格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수사의 주체가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다는 점이나 수사의 방법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도 수사기관이 행한 범죄수사는 법률에 정해진 적정절차(due process)에 따라서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은 더욱 더 중요하다.

搜查의 技術性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수사의 수단·방법에 제약이 있는 것은 불편하고 비능률적이며 진실의 발견과 그를 위한 자료수집이라는 수사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실의 발견이나 그를 위한 자료수집도 다른 사회적 요청, 즉 인권보장 등의 요청과 조화되어 행해져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진실의 발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요청된다. 더욱이 無罪推定の 原理이 확립되어 있고 자백과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제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부정 등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수사의 법률적 성격은 날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憲法에서는 모든 國民의 身體의 自由를 보장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을 부정하고 고문의 금지, 복비권, 영장주의, 변호권, 구속적부심사제도 등 수사단계에서 준수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은 모두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위험이 가장 많은 수사에 대하여 그 사법적 역할을 명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는 人權保護라는 헌법적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사가 행해져야 한다.

犯罪搜查는 節次的 性格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節次란 일정한 목적으로 행해져 있는 여러 가지의 행위들의 질서 있는 연속을 말한다. 하나의 절차는 다음에 오는 절차를 예상하고 있으며 그것에 연결되어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선행절차는 후행 절차의 수단으로서 성격을 띠고, 후행절차는 선행절차의 목적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일련의 刑罰執行節次 중 최초

의 절차가 犯罪搜查이다. 형사 절차는 범죄수사에서 시작하여 공소의 제기·심리·재판으로 연결되어 진전되면서 점차로 실체가 명확해지고 구체화되어 간다. 따라서 그 절차도 여러 기관에 의해서 분담 실행된다. 범죄수사는 그것 자체로서 완결된 것은 아니고, 다음 단계인 公訴 提犯과 裁判으로 이어지는 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절차적 성격을 무시하면서 범죄수사를 위하여서만 수사한다고 함은 본래적인 것은 아니다. 검거만을 위한 검거, 조사만을 위한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국가경찰, 검찰 파쇼(fascio)라 하는 弊風과 상통하는 것이고 바른 범죄수사라 할 수 없다. (권오병, 형사소송법, 일신사, 1965, 86면.)

개개의 수사가 技術的·法律적으로 잘 이루어져 수사 자체로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적·사회적 요청이나 범죄예방목적 또는 인간본성에 어긋나면 국가사회가 추구하는 적정한 복지구현적 국가행법권이 행사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수사는 국가사회의 존립과 질서 유지라는 하나의 명제와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또 하나의 명제에서 양자를 잘 조화한 형사정책적 고려아래에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박주인, '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필요한가', 대한변호사협회지 통권 55권, 1980.3, 23면.)

이러한 점에서 범죄수사는 정책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범죄수사는 技術性·法律性·節次性·政策性을 가진 소송절차이다. 이러한 성격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제약·통합되는 입체적·동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중 어느 한 성격만을 부각시켜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검토할 수 없고 위의 모든 성격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논해야 할 것으로 본다.

令狀主義란 法官이 발부한 適法한 令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진계호, 형사소송법, 232면.)

영장주의는 제3자인 법관의 사법적 통제를 통해서 강제처분



노 영 민 포천경찰서

의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영장주의는 강제처분의 일면에 타당한 원리로서 반드시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장주의가 실제상 가장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수사단계이다. 영장주의는 법원과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모두에 적용된다.

憲法 제12조 3항은 原則적으로 逮捕·拘束·押收 또는 搜索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영장주의를 헌법상 원칙으로 선언하고, 형사소송법도 피고인과 피의자의 구속에 영장발부를 요건으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73조·제201조.) 피의자의 체포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令狀이란 強制處分の 裁判을 기재한 재판서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이 인정하는 영장의 종류에는 ① 법원이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하여 출석할 것을 명하는 召喚狀, (형사소송법 제73조·제74조.) ② 법원 또는 관사가 행하는 구속영장 및 물건의 압수·수색을 명하는 押收·搜索令狀, 형사소송법 제73조·제77조·제113조·제114조·제136조·제184조.) ③ 수사기관이 행하는 拘束令狀 및 押收·搜索令狀, 형사소송법 제201조 1항·제207조 1항·제209조·제215조·제219조.) ④ 감정을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하거나 허가하는 鑑定留置令狀 또는 鑑定處分許可狀 형사소송법 제211조의 4·제172조 4항.) 등이 있다. (다음호에 계속)

경

제51회 경기도체육대회 5연패!

축

16만 포천시민과 함께 이룩하였습니다. 선수단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포천시체육회 · 포천시생활체육협의회 가맹단체

- 포천시육상경기연맹 회장 이민형
- 포천시축구협회 회장 박상옥
- 포천시배구협회 회장 홍태식
- 포천시배드민턴협회 회장 양호식
- 포천시탁구협회 회장 이기양
- 포천시태권도협회 회장 조복현
- 포천시공도협회 회장 김길태
- 포천시역도연맹 회장 정상영
- 포천시유도협회 회장 강홍식
- 포천시씨름협회 회장 이범모
- 포천시테니스협회 회장 고영일
- 포천시볼링협회 회장 김형석
- 포천시골프협회 회장 김상길
- 포천시검도협회 회장 이충무
- 포천시댄스스포츠경기연맹 회장 신건배
- 포천시합기도협회 회장 이한철
- 포천시수영연맹 회장 김중국
- 포천시비록협회 회장 유양연
- 포천시스키협회 회장 김연태
- 포천시사격연맹 회장 조준범
- 포천시축구연합회 회장 이상만
- 포천시게이트볼연합회 회장 오병익
- 포천시탁구연합회 회장 양재실
- 포천시야구연합회 회장 장승호

전무이사
우 상 돈
●
체육회 사무국장
전 경 구
●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백 태 옥